

화성시 동탄지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 / 선계약후검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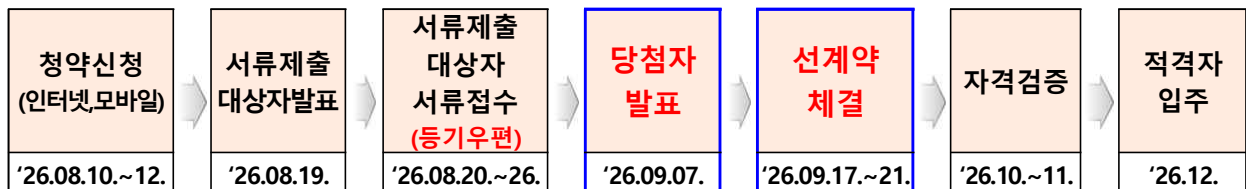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30(목)**이며, 이는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 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격 요건(소득, 자산, 기간)을 완화하여** 당첨자에 한해 동호를 추천,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완하기준은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구 분	완 화 내 용
소 득 요 건	적용 배제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행)
자 산 요 건	적용 배제 (단, 자동차가액은 완화하지 않음)
차 량 요 건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4,542만원 이하 (단,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 간 요 건	청년계층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완화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완화전 7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6세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 6세이하]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적격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화성동탄2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07.31.~2007.07.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61.07.30.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완화자격 재계약 요건]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금회 공고하는 단지에 대하여 한 개 블록의 한 개 주택유형만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경쟁 시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선계약 체결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인요청에 의한 신청취소는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 미입금시 동·호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하며,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 적격 안내 후 잔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부적격자로 결정시 개별통지 및 계약 해지절차가 진행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격 부적격이 아닌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입주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및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문자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소	건설호수	입주개시
A4-1블록(2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영천동 864)	1,640호	'20. 08
A53블록(38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90(신동 747)	700호	'23. 04
A54블록(38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가길 35(신동 748)	1,350호	'23. 11
A57-1블록(40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8길 15(신동 818)	850호	'22. 06
A77-1블록(35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산척동 747)	900호	'20. 07
A82블록(28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장지동 913)	816호	'19. 05
지원6-2블록(1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영천동 824-4)	280호	'22. 09

2. 모집대상 주택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건설호수	기존예비자수	모집할예비자수	세대당 계약면적(m ²)					최대거주기간(년)	구조 및 난방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기타공용	공용면적 주차장	합계		
합계			6,096	3	867							
화성동탄2 A4-1블록	16A	대학생 청년	450	-	60	16.30	9.8814	1.8726	9.5523	37.6063	10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6A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430	-	60	26.64	16.1498	3.0606	15.6119	61.4623	10 20	
	36A-1 (주거약자)	고령자	54	-	4	36.39	22.0604	4.1808	21.3257	83.9569	20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20	-	18	36.39	22.0604	4.1808	21.3257	83.9569	10 10~14	
	41A/41B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0	-	12	41.34	25.0613	4.7494	24.2266	95.3773	10 10~14	
	44A-S~ 44R-S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2	-	4	44.41	26.9224	5.1021	26.0257	102.4602	10 10~14	
	44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8	-	7	44.41	26.9224	5.1021	26.0257	102.4602	10 10~14	
	44B/C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138	-	15	44.43	26.9345	5.1045	26.0375	102.5065	10 10~14 20	

화성동탄2 A53블록	21A/A-1 (주거약자)	고령자	58	-	10	21.92	11.7329	3.8092	15.2856	52.7477	2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1A/A-2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308	-	40	21.92	11.7329	3.8092	15.2856	52.7477	10 10 20	
	36A/A-1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36	-	7	36.86	19.7298	6.4056	25.7039	88.6993	10 10~14 20 20	
	36B/B-1/ B-2/B-3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178	-	30	36.80	19.6977	6.3951	25.662	88.5548	10 10~14 20 20	
	44A/A-1/ A-2/A-3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120	-	8	44.75	23.953	7.7767	31.2059	107.6856	10 10~14 20 20	
화성동탄2 A54블록	21Aa/21Ab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452	-	40	21.33	12.802	2.5514	9.0182	45.7016	10 10 20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지역난방
	21B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240	-	40	21.14	12.6879	2.5287	8.9379	45.2945	10 10 20	
	26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92	-	12	26.18	15.7129	3.1315	11.0688	56.0932	10 10 20	
	37Aa (주거약자)	고령자	30	-	7	37.95	22.7771	4.5394	16.0451	81.3116	20	
	37Aa/37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6	-	6	37.95	22.7771	4.5394	16.0451	81.3116	10~14	
	37Ab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90	-	11	37.60	22.567	4.4976	15.8971	80.5617	10 10~14 20	
	44Aa/44A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2	-	3	44.07	26.4503	5.2715	18.6326	94.4244	10~14	
	45Aa/45B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176	2	20	45.62	27.3806	5.4569	19.2879	97.7454	10 10~14 20	
	45Ab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102	1	12	45.04	27.0324	5.3874	19.0427	96.5025	10 10~14 20	
화성동탄2 A57-1블록	16A	대학생 청년	80	-	10	16.70	9.4442	1.7907	7.4385	35.3734	10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1AH/21AL	대학생 청년	174	-	20	21.36	12.0795	2.2904	9.5142	45.2441	10 10	
	26AH/26AL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292	-	35	26.06	14.7375	2.7944	11.6076	55.1995	10 10 20	
	26B (주거약자)	고령자	48	-	10	26.25	14.8449	2.8149	11.6923	55.6021	20	
	36AH/36AL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8	-	10	36.72	20.7659	3.9375	16.3558	77.7792	10 10~14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84	-	35	44.70	25.2788	4.7933	19.9103	94.6824	10~14	
화성동탄2 A77-1블록	21A	대학생 청년	282	-	45	21.70	10.4128	1.8334	9.9707	43.9169	10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6A/26B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62	-	40	26.03	12.4906	2.1992	11.9602	52.6800	10 20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384	-	55	36.04	17.2940	3.0450	16.5596	72.9386	10 10~14 20	
	36B (주거약자)	고령자	42	-	3	36.04	17.2940	3.0450	16.5596	72.9386	20	
화성동탄2 A82블록	16A	대학생 청년	256	-	40	16.65	8.6265	1.5840	8.5963	35.4568	10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6AS (주거약자)	고령자	27	-	8	26.26	13.6056	2.4983	13.5579	55.9218	20	
	26A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35	-	30	26.26	13.6056	2.4983	13.5579	55.9218	10 20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298	-	40	36.43	18.8748	3.4658	18.8086	77.5792	10 10~14 20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20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72	-	26	20.94	11.6298	6.8915	21.0409	60.5022	10 10 2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0B (주거약자)	고령자	16	-	6	20.94	11.6298	6.8915	21.0409	60.5022	20	
	28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84	-	28	28.92	16.0618	9.5178	29.0594	83.5590	10 10 20	

- **금회 공급단지중 지원6-2블록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동 블록 인큐베이팅센터내에 입주중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선순위로 일부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도배장판 등 내부 시설물은 내용연수 경과로 최초 입주시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태로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동일 공급형이라도 주거약자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된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A4-1블록 임대조건 및 단지특성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16A	대학생, 청년(소득無)	21,080,000	1,054,000	20,026,000	89,590	+	5,000,000	26,080,000	64,590
						-	17,000,000	4,080,000	139,170
	청년(소득有)	22,320,000	1,116,000	21,204,000	94,860	+	6,000,000	28,320,000	64,860
						-	18,000,000	4,320,000	147,360
26A	청년(소득無)	38,080,000	1,904,000	36,176,000	161,840	+	19,000,000	57,080,000	66,840
						-	31,000,000	7,080,000	252,250

	청년(소득有)	40,320,000	2,016,000	38,304,000	171,360	+	20,000,000	60,320,000	71,360
						-	33,000,000	7,320,000	267,610
	주거급여수급자	33,600,000	1,680,000	31,920,000	142,800	+	16,000,000	49,600,000	62,800
						-	28,000,000	5,600,000	224,460
36A-1 (주거약자)	고령자	58,900,000	2,945,000	55,955,000	250,320	+	30,000,000	88,900,000	100,320
						-	49,000,000	9,900,000	393,230
36A	청년(소득無)	52,700,000	2,635,000	50,065,000	223,970	+	26,000,000	78,700,000	93,970
						-	44,000,000	8,700,000	352,300
	청년(소득有)	55,800,000	2,790,000	53,010,000	237,150	+	28,000,000	83,800,000	97,150
						-	46,000,000	9,800,000	371,3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2,000,000	3,100,000	58,900,000	263,500	+	31,000,000	93,000,000	108,500
						-	52,000,000	10,000,000	415,160
41A/41B	청년(소득無)	60,860,000	3,043,000	57,817,000	258,650	+	31,000,000	91,860,000	103,650
						-	51,000,000	9,860,000	407,400
	청년(소득有)	64,440,000	3,222,000	61,218,000	273,870	+	32,000,000	96,440,000	113,870
						-	54,000,000	10,440,000	431,37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1,600,000	3,580,000	68,020,000	304,300	+	36,000,000	107,600,000	124,300
						-	60,000,000	11,600,000	479,300
44A-S~ 44R-S	청년(소득無)	66,300,000	3,315,000	62,985,000	281,770	+	33,000,000	99,300,000	116,770
						-	55,000,000	11,300,000	442,180
	청년(소득有)	70,200,000	3,510,000	66,690,000	298,350	+	35,000,000	105,200,000	123,350
						-	58,000,000	12,200,000	467,5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8,000,000	3,900,000	74,100,000	331,500	+	39,000,000	117,000,000	136,500
						-	65,000,000	13,000,000	521,080
44A	청년(소득無)	66,300,000	3,315,000	62,985,000	281,770	+	33,000,000	99,300,000	116,770
						-	55,000,000	11,300,000	442,180
	청년(소득有)	70,200,000	3,510,000	66,690,000	298,350	+	35,000,000	105,200,000	123,350
						-	58,000,000	12,200,000	467,5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8,000,000	3,900,000	74,100,000	331,500	+	39,000,000	117,000,000	136,500
						-	65,000,000	13,000,000	521,080
44B/C	청년(소득無)	66,300,000	3,315,000	62,985,000	281,770	+	33,000,000	99,300,000	116,770
						-	55,000,000	11,300,000	442,180
	청년(소득有)	70,200,000	3,510,000	66,690,000	298,350	+	35,000,000	105,200,000	123,350
						-	58,000,000	12,200,000	467,5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8,000,000	3,900,000	74,100,000	331,500	+	39,000,000	117,000,000	136,500
						-	65,000,000	13,000,000	521,080
	고령자	74,100,000	3,705,000	70,395,000	314,920	+	37,000,000	111,100,000	129,920
						-	62,000,000	12,100,000	495,750

- 16A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되며,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16A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 41A/B, 44A-S~R-S, 44A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 44B/C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41A/B, 44A-S~44R-S은 복층구조입니다. 복층구조 공급형 신청 시 반드시 팸플릿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 A4-1블록 일부 복층세대(24형~44형)의 경우 내부 복층계단으로의 가구,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의 물품 운반이 불가능하므로, 복층(2층)으로 가구·가전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다리차(일부세대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 차량은 입주자가 직접 임차 후 비용부담 하여야 합니다.
- 화성동탄2 A4-1블록 일부 복층세대(24형~44형)의 경우 인접세대 데크를 통해 이사하여야 합니다.

■ A53블록 임대조건 및 단지특성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21A/A-2	대학생, 청년(소득無)	25,160,000	1,258,000	23,902,000	106,930	+	9,000,000	34,160,000	61,930
						-	21,000,000	4,160,000	168,180
	청년(소득有)	26,640,000	1,332,000	25,308,000	113,220	+	10,000,000	36,640,000	63,220
						-	22,000,000	4,640,000	177,380
	주거급여수급자	22,200,000	1,110,000	21,090,000	94,350	+	6,000,000	28,200,000	64,350
						-	18,000,000	4,200,000	146,850
21A/A-1 (주거약자)	고령자	28,120,000	1,406,000	26,714,000	119,510	+	11,000,000	39,120,000	64,510
						-	23,000,000	5,120,000	186,590
36A/A-1	청년(소득無)	44,880,000	2,244,000	42,636,000	190,740	+	22,000,000	66,880,000	80,740
						-	37,000,000	7,880,000	298,650
	청년(소득有)	47,520,000	2,376,000	45,144,000	201,960	+	24,000,000	71,520,000	81,960
						-	39,000,000	8,520,000	315,7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2,800,000	2,640,000	50,160,000	224,400	+	26,000,000	78,800,000	94,400
						-	44,000,000	8,800,000	352,730
	주거급여수급자	39,600,000	1,980,000	37,620,000	168,300	+	20,000,000	59,600,000	68,300
						-	33,000,000	6,600,000	264,550
	고령자	50,160,000	2,508,000	47,652,000	213,180	+	25,000,000	75,160,000	88,180
						-	42,000,000	8,160,000	335,680
36B/B-1/ B-2/B-3	청년(소득無)	44,880,000	2,244,000	42,636,000	190,740	+	22,000,000	66,880,000	80,740
						-	37,000,000	7,880,000	298,650
	청년(소득有)	47,520,000	2,376,000	45,144,000	201,960	+	24,000,000	71,520,000	81,960
						-	39,000,000	8,520,000	315,7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2,800,000	2,640,000	50,160,000	224,400	+	26,000,000	78,800,000	94,400
						-	44,000,000	8,800,000	352,730
	주거급여수급자	39,600,000	1,980,000	37,620,000	168,300	+	20,000,000	59,600,000	68,300
						-	33,000,000	6,600,000	264,550
	고령자	50,160,000	2,508,000	47,652,000	213,180	+	25,000,000	75,160,000	88,180
						-	42,000,000	8,160,000	335,680
44A/A-1/ A-2/A-3	청년(소득無)	55,420,000	2,771,000	52,649,000	235,530	+	28,000,000	83,420,000	95,530
						-	46,000,000	9,420,000	369,690
	청년(소득有)	58,680,000	2,934,000	55,746,000	249,390	+	29,000,000	87,680,000	104,390
						-	49,000,000	9,680,000	392,30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5,200,000	3,260,000	61,940,000	277,100	+	33,000,000	98,200,000	112,100
						-	54,000,000	11,200,000	434,600
	주거급여수급자	48,900,000	2,445,000	46,455,000	207,820	+	24,000,000	72,900,000	87,820
						-	41,000,000	7,900,000	327,400
	고령자	61,940,000	3,097,000	58,843,000	263,240	+	31,000,000	92,940,000	108,240
						-	51,000,000	10,940,000	411,990

- 21A/A-1/A-2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형(하이라이트형), 냉장고, 책상, 옷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며, 36형 및 44A/A-1/A-2/A-3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형(하이라이트형), 냉장고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21A/A-2형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A-1형, 36B/B-1/B-2/B-3형, 44A/A-1/A-2/A-3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A/A-1/A-2형, 36A/A-1형, 36B/B-1/B-2/B-3형, 44A/A-1/A-2/A-3형은 계약 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되며 동·호에 따라 발코니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 A54블록 임대조건 및 단지특성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21Aa/21Ab	대학생, 청년(소득無)	25,160,000	1,258,000	23,902,000	106,930	+	9,000,000	34,160,000	61,930
						-	21,000,000	4,160,000	168,180
	청년(소득有)	26,640,000	1,332,000	25,308,000	113,220	+	10,000,000	36,640,000	63,220
						-	22,000,000	4,640,000	177,380
	주거급여수급자	22,200,000	1,110,000	21,090,000	94,350	+	6,000,000	28,200,000	64,350
						-	18,000,000	4,200,000	146,850
21B	대학생, 청년(소득無)	25,160,000	1,258,000	23,902,000	106,930	+	9,000,000	34,160,000	61,930
						-	21,000,000	4,160,000	168,180
	청년(소득有)	26,640,000	1,332,000	25,308,000	113,220	+	10,000,000	36,640,000	63,220
						-	22,000,000	4,640,000	177,380
	주거급여수급자	22,200,000	1,110,000	21,090,000	94,350	+	6,000,000	28,200,000	64,350
						-	18,000,000	4,200,000	146,850
26A	대학생, 청년(소득無)	31,620,000	1,581,000	30,039,000	134,380	+	14,000,000	45,620,000	64,380
						-	26,000,000	5,620,000	210,210
	청년(소득有)	33,480,000	1,674,000	31,806,000	142,290	+	16,000,000	49,480,000	62,290
						-	28,000,000	5,480,000	223,950
	주거급여수급자	27,900,000	1,395,000	26,505,000	118,570	+	11,000,000	38,900,000	63,570
						-	23,000,000	4,900,000	185,650
37Aa (주거약자)	고령자	52,060,000	2,603,000	49,457,000	221,250	+	26,000,000	78,060,000	91,250
						-	43,000,000	9,060,000	346,660
37Aa/37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4,800,000	2,740,000	52,060,000	232,900	+	27,000,000	81,800,000	97,900
						-	45,000,000	9,800,000	364,150
37Ab	청년(소득無)	46,580,000	2,329,000	44,251,000	197,960	+	23,000,000	69,580,000	82,960
						-	39,000,000	7,580,000	311,710
	청년(소득有)	49,320,000	2,466,000	46,854,000	209,610	+	25,000,000	74,320,000	84,610
						-	41,000,000	8,320,000	329,19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4,800,000	2,740,000	52,060,000	232,900	+	27,000,000	81,800,000	97,900
						-	45,000,000	9,800,000	364,150
주거급여수급자	41,100,000	2,055,000	39,045,000	174,670	+	20,000,000	61,100,000	74,670	
					-	34,000,000	7,100,000	273,830	
44Aa/ 44A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800,000	3,240,000	61,560,000	275,400	+	33,000,000	97,800,000	110,400
						-	54,000,000	10,800,000	432,900
45Aa/45B	청년(소득無)	57,120,000	2,856,000	54,264,000	242,760	+	29,000,000	86,120,000	97,760
						-	47,000,000	10,120,000	379,840
	청년(소득有)	60,480,000	3,024,000	57,456,000	257,040	+	30,000,000	90,480,000	107,040
						-	50,000,000	10,480,000	402,87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7,200,000	3,360,000	63,840,000	285,600	+	34,000,000	101,200,000	115,600
						-	56,000,000	11,200,000	448,930
주거급여수급자	50,400,000	2,520,000	47,880,000	214,200	+	25,000,000	75,400,000	89,200	
					-	42,000,000	8,400,000	336,700	
45Ab	청년(소득無)	57,120,000	2,856,000	54,264,000	242,760	+	29,000,000	86,120,000	97,760
						-	47,000,000	10,120,000	379,840

	청년(소득有)	60,480,000	3,024,000	57,456,000	257,040	+	30,000,000	90,480,000	107,040
						-	50,000,000	10,480,000	402,87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7,200,000	3,360,000	63,840,000	285,600	+	34,000,000	101,200,000	115,600
						-	56,000,000	11,200,000	448,930
	주거급여수급자	50,400,000	2,520,000	47,880,000	214,200	+	25,000,000	75,400,000	89,200
						-	42,000,000	8,400,000	336,700

- 21Aa/Ab, 21B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 냉장고, 책상, 옷장이 설치되며, 26A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 드레스룸이 설치, 37Aa/B, 37Ab, 44Aa/Ab, 45Aa/B, 45Ab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 21Aa/Ab, 21B, 26A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7Ab, 45Aa/B, 45Ab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가하여 공급합니다.
- 44Aa/Ab은 계약 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되며 동호에 따라 발코니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 A57-1블록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16A	대학생, 청년(소득無)	17,680,000	884,000	16,796,000	75,140	+	3,000,000	20,680,000	60,140
						-	14,000,000	3,680,000	115,970
	청년(소득有)	18,720,000	936,000	17,784,000	79,560	+	3,000,000	21,720,000	64,560
						-	15,000,000	3,720,000	123,310
21AH/AL	대학생, 청년(소득無)	24,140,000	1,207,000	22,933,000	102,590	+	8,000,000	32,140,000	62,590
						-	20,000,000	4,140,000	160,920
	청년(소득有)	25,560,000	1,278,000	24,282,000	108,630	+	9,000,000	34,560,000	63,630
						-	21,000,000	4,560,000	169,880
26AH/AL	대학생, 청년(소득無)	29,920,000	1,496,000	28,424,000	127,160	+	13,000,000	42,920,000	62,160
						-	25,000,000	4,920,000	200,070
	청년(소득有)	31,680,000	1,584,000	30,096,000	134,640	+	14,000,000	45,680,000	64,640
						-	26,000,000	5,680,000	210,470
	주거급여수급자	26,400,000	1,320,000	25,080,000	112,200	+	10,000,000	36,400,000	62,200
						-	22,000,000	4,400,000	176,360
26B (주거약자)	고령자	33,440,000	1,672,000	31,768,000	142,120	+	16,000,000	49,440,000	62,120
						-	28,000,000	5,440,000	223,780
36AH/AL	청년(소득無)	42,500,000	2,125,000	40,375,000	180,620	+	21,000,000	63,500,000	75,620
						-	35,000,000	7,500,000	282,700
	청년(소득有)	45,000,000	2,250,000	42,750,000	191,250	+	22,000,000	67,000,000	81,250
						-	37,000,000	8,000,000	299,16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0,000,000	2,500,000	47,500,000	212,500	+	25,000,000	75,000,000	87,500
						-	41,000,000	9,000,000	332,080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1,600,000	3,080,000	58,520,000	261,800	+	31,000,000	92,600,000	106,800
						-	51,000,000	10,600,000	410,550

- 16A, 21AH/AL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냉장고장 포함), 책상이 설치됩니다.
- AH타입과 AL타입은 구조는 같으나 일부 벽체 치수 차이가 있으며, 공급형을 통합하여 청약신청을 받아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16A, 21AH/AL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H/AL형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H/AL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가하여 공급합니다.
- 16A는 세탁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단지 내 공용(코인)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A77-1블록 임대조건 및 단지특성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21A	대학생, 청년(소득無)	26,520,000	1,326,000	25,194,000	112,710	+	10,000,000	36,520,000	62,710
						-	22,000,000	4,520,000	176,870
	청년(소득有)	28,080,000	1,404,000	26,676,000	119,340	+	11,000,000	39,080,000	64,340
						-	23,000,000	5,080,000	186,420
26A/26B	청년(소득無)	32,980,000	1,649,000	31,331,000	140,160	+	16,000,000	48,980,000	60,160
						-	27,000,000	5,980,000	218,910
	청년(소득有)	34,920,000	1,746,000	33,174,000	148,410	+	17,000,000	51,920,000	63,410
						-	29,000,000	5,920,000	232,990
	주거급여수급자	29,100,000	1,455,000	27,645,000	123,670	+	12,000,000	41,100,000	63,670
						-	24,000,000	5,100,000	193,670
36A	청년(소득無)	47,260,000	2,363,000	44,897,000	200,850	+	24,000,000	71,260,000	80,850
						-	39,000,000	8,260,000	314,600
	청년(소득有)	50,040,000	2,502,000	47,538,000	212,670	+	25,000,000	75,040,000	87,670
						-	41,000,000	9,040,000	332,2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5,600,000	2,780,000	52,820,000	236,300	+	28,000,000	83,600,000	96,300
						-	46,000,000	9,600,000	370,460
	고령자	52,820,000	2,641,000	50,179,000	224,480	+	26,000,000	78,820,000	94,480
						-	44,000,000	8,820,000	352,810
36B (주거약자)	고령자	52,820,000	2,641,000	50,179,000	224,480	+	26,000,000	78,820,000	94,480
						-	44,000,000	8,820,000	352,810

- 21A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21A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B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82블록 임대조건 및 단지특성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16A	대학생, 청년(소득無)	17,340,000	867,000	16,473,000	73,690	+	2,000,000	19,340,000	63,690
						-	14,000,000	3,340,000	114,520
	청년(소득有)	18,360,000	918,000	17,442,000	78,030	+	3,000,000	21,360,000	63,030
						-	15,000,000	3,360,000	121,780
26AS (주거약자)	고령자	34,200,000	1,710,000	32,490,000	145,350	+	17,000,000	51,200,000	60,350
						-	28,000,000	6,200,000	227,010
26A	청년(소득無)	30,600,000	1,530,000	29,070,000	130,050	+	14,000,000	44,600,000	60,050
						-	25,000,000	5,600,000	202,960
	청년(소득有)	32,400,000	1,620,000	30,780,000	137,700	+	15,000,000	47,400,000	62,700
						-	27,000,000	5,400,000	216,450
	주거급여수급자	27,000,000	1,350,000	25,650,000	114,750	+	10,000,000	37,000,000	64,750
						-	22,000,000	5,000,000	178,910
36A	청년(소득無)	44,200,000	2,210,000	41,990,000	187,850	+	22,000,000	66,200,000	77,850
						-	37,000,000	7,200,000	295,760

	청년(소득有)	46,800,000	2,340,000	44,460,000	198,900	+	23,000,000	69,800,000	83,900
						-	39,000,000	7,800,000	312,6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2,000,000	2,600,000	49,400,000	221,000	+	26,000,000	78,000,000	91,000
						-	43,000,000	9,000,000	346,410
	고령자	49,400,000	2,470,000	46,930,000	209,950	+	25,000,000	74,400,000	84,950
						-	41,000,000	8,400,000	329,530

- 16A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 옷장)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16A의 "대학생", "청년" 공급물량, 26A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36A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지원6-2블록 임대조건 및 단지특성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20A	대학생, 청년(소득無)	26,860,000	1,343,000	25,517,000	114,150	+	10,000,000	36,860,000	64,150
						-	22,000,000	4,860,000	178,310
	청년(소득有)	28,440,000	1,422,000	27,018,000	120,870	+	12,000,000	40,440,000	60,870
						-	23,000,000	5,440,000	187,950
	주거급여수급자	23,700,000	1,185,000	22,515,000	100,720	+	8,000,000	31,700,000	60,720
						-	19,000,000	4,700,000	156,130
20B (주거약자)	고령자	30,020,000	1,501,000	28,519,000	127,580	+	13,000,000	43,020,000	62,580
						-	25,000,000	5,020,000	200,490
28A	대학생, 청년(소득無)	39,100,000	1,955,000	37,145,000	166,170	+	19,000,000	58,100,000	71,170
						-	32,000,000	7,100,000	259,500
	청년(소득有)	41,400,000	2,070,000	39,330,000	175,950	+	21,000,000	62,400,000	70,950
						-	34,000,000	7,400,000	275,110
	주거급여수급자	34,500,000	1,725,000	32,775,000	146,620	+	17,000,000	51,500,000	61,620
						-	28,000,000	6,500,000	228,280

- 지원6-2블록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동 블록 인큐베이팅센터내에 입주중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선순위로 일부 공급합니다.
- 20A, 20B 주택에는 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전기쿡탑(2구형)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20A, 28A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통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기준이며,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상기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약신청 시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였으나, 서류검토 및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1. 대학생 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2. 청년 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㉔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6.07.31 ~ 2007.07.30.)
-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완화조건 7년 이내] 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고일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 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함
* 현재 직장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아닌, **이전부터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프리랜서, 자영업 등 위 서류를 통해 소득업무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사기간 증빙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완화조건】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일 것 또는 【완화조건】 만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모집대상 주택을 각각 신청 시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에 따라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4. 고려자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출생일 1961.07.30. 이전 출생)

- ①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②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 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고려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천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5. 주거급여수급자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인터넷 청약신청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6.08.10.(월) 10:00 ~'26.08.12.(수) 17:00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앱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현장접수대행> '26.08.12.(수)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26.08.19.(수) 17: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6.08.20.(목) ~ '26.08.26.(수)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방문제출 불가) 2026.08.26.(수) 소인까지만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2층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26.09.07.(월) 17: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ARS(1661-7700)	<전자계약> '26.09.17.(목) 10:00 ~'26.09.21.(월) 16: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현장계약> '26.09.17.(목) 10:00 ~'26.09.18.(금)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65세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공고문 6. 신청서류 참고](#))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6.08.19.(수) 17:00 이후**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발표 : **'26.09.07.(월) 17:00 이후**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ARS(1661-7700)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를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LH청약플러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우편 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통상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향후 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금회 모집 공고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소득이 없는 청년에 한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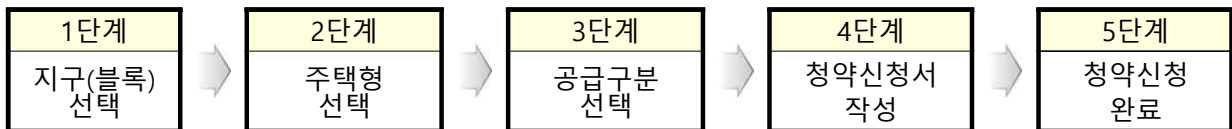
- * 청약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08.10.(월) 10:00시부터 '26.08.12(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08.10.(월) 10:00시부터 '26.08.12(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8.12.(수) (10:00~16: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신청 장소 :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18 스마트주차장 3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계약실
- 접수현장에서 청약신청에 따른 **상답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대행 접수 시 구비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와 **신청서류[공고문 6.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대행 접수 장소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신청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영천동) 스마트주차장 3층 대회의실(계약실)
교통편	버스정류장명 : 한미약품 푸르지오 / 동탄첨단산업지구
약도	

■ **현장 대행 접수 시 구비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②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도장 ②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6.08.19.(수)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일반우편 서류접수 불가)**
 - 서류제출 기간 : **'26.08.20(목)~08.26(수)**
 - 마감일 [26.08.26.(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2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18469)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기재 (예 김동탄/A4-1/10001/16A형)
- 현장대행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합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7.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직접 인쇄)**으로 제출(열람용 불가)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대행접수 신청자 : 현장대행 접수 시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기재)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세대구성원 이름으로 서명 • (작성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이 정자서명 또는 날인 ※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별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별첨)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별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필수]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제출대상) 모집공고일(2026.07.30.)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행정 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필수]	(제출대상)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결혼 여부 상관없이 필히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예 : 동거인)등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반드시 상세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 서류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제출대상)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제출대상)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 기관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제출대상) 입양자녀가 있어 인정 받으려는 경우	행정 복지 센터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 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이혼사실확인)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동일 거주지 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19세이상~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 노동청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청 년 계 층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학교	병무청	저축가입은행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반드시 전체이력으로 발급)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 센터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 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신 혼 부 부 · 한 부 모 가 족 계 층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저축가입은행				

고령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필수 제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압세압자 행정복지센터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6.09.07.(월) 17:00 이후**

• 당첨자 발표 조회방법

예비입주자 당첨 여부는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예비입주자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안내

- 전자계약 : '26.09.17.(목) ~ 09.21.(월) 10:00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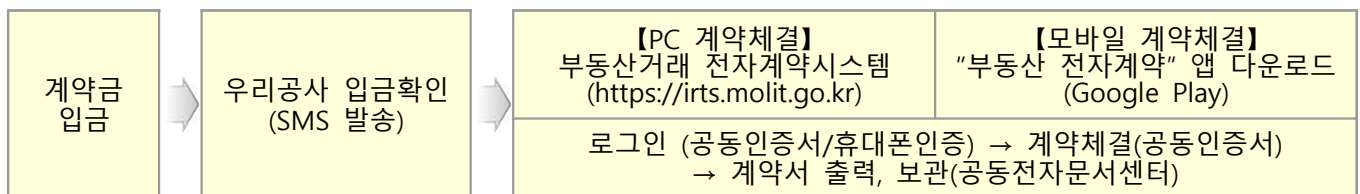
- 현장계약 : '26.09.17.(목) ~ 09.18.(금) 10:00 ~ 16:00(12~13시 제외)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동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자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거나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LH공사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2층)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
-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분양권 등 소유 여부,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소명기간 내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부적격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가 입주자격 통지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입주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계층의 경우 계약시 임대조건은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검토 내용으로 계약진행되나 추후 자격검증 결과 소득 결과(소득有)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금회 공급 시 자격완화 부분 검증제외, 갱신계약 시부터 적용)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구 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적용 배제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행)
	자산 요건	적용 배제 (단, 자동차가액은 완화하지 않음)
	차 량 요건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4,542만원 이하 (단,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 간 요건	청년계층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완화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완화전 7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6세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 6세이하]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소득 및 총자산 배제)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자는 제외, 단, 갱신계약시점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단,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는 완화조건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 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분양권 등 소유 여부,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소명기간 내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부적격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가 입주적격통지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입주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및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임시로 열쇠 불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는 열쇠 불출이 불가합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특성 자세한 사항은 최초모집공고문 참조)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 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1세대 1차량 이하 등록 원칙을 유지하며, 대학생 계층은 차량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주차대수 현황**

단지	총 세대수	주차대수
A4-1블록	1,640호	1,162대
A53블록	700호	520대
A54블록	1,350호	730대
A57-1블록	850호	538대
A77-1블록	900호	631대
A82블록	816호	579대
지원6-2블록	280호	203대

- 주택소유, 소득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시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사항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단이→밖여단)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접 수 처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 현장접수대행 :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3층 계약실 - 서 류 제 출 :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2층 행복주택 공급담당자앞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7.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